

제395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4월14일(목)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5)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4)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
4.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
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0)
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1)
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3)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8)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8)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8)
11.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3)
1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1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4)
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0)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08)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2)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0)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1)
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3)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4)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0)
2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5)
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
24. 방사선방호 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8)

상정된 안건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5) 2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4) 2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 2
4.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 2
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0) 2
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1) 2

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3)	2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8)	2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8)	2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8)	2
11.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3)	2
1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2
1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4)	2
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0)	2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08)	2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2)	2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0)	2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1)	2
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3)	2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4)	2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0)	2
2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5)	3
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	3
24. 방사선방호 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8)	3

(14시30분 개의)

○소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5)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4)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4)
4.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3)
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0)
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1)
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3)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8)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8)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8)
11.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3)
1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7)
1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4)
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0)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08)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2)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0)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1)
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3)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4)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0)

2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5)

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

24. 방사선방호 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8)

○소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 제1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방사선방호 기본법안까지 이상 2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1차관과 혁신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 소위 자료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정리되면 안전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히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소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언론인들 혹시 계시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논의는 1차관 소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혁신본부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우주개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우주개발사업의 수행으로 개발된 기술이 실시되어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3쪽입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민간 우주개발 지원정책 마련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며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 제출안의 경우 장 구분 없이 총 3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현행법에 장 체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총 7장 44개의 조문 체제로 변경하였고 관련 조문을 재배치하여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였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정의 규정 신설 관련입니다.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라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기술상의 흠결을 보완하고 우주사업자와 우주산업클러스터 정의의 신설로 관련 조문의 법적 일관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현행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결격사유, 발사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준궤도발사체를 우주발사체와 별도로 정의할 경우 법 해석상 준궤도발사체에 대해서는 위 조문들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두 개념을 함께 정의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민간 우주개발 촉진과 관련하여 우주개발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

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은 민간 우주개발 추진을 우주개발 진흥의 한 축으로 설정하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정의 규정에서 문구를 정의 규정과 연계해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18조(민간 우주개발의 촉진)과 관련해서 기존 시책 마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전략 수립 시기나 주기가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립 시기나 주기를 법률에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18조의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활용 등)은 별도의 재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효과적으로 민간 우주개발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참고로 우주개발 기반시설로는 발사체 발사장, 위성조립시설 등이 있고 항우연 그리고 카이스트 등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과 관련해서 이원욱 의원안 내용입니다.

민간 우주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민간 우주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우주개발 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6쪽입니다.

이원욱 의원안 관련 내용입니다.

우주개발 관련 민간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용으로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이윤 보상 등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정부 제출안에서 신설되는 제18조의3(우주개발 사업 추진방법)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원욱 의원안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협약을 통해서만 실시하던 추진 방법을 계약을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하면서 이 경우 계약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별도의 이윤을 계상할 수 없었던 협약방식에 비해 이윤을 계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26쪽입니다.

우주신기술 지정 관련입니다.

우주개발 관련 기술은 분야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로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로 이를 육성·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18조의7제1항 각 호에서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된 우주기술, 제3호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의 경우 우주신기술로 지정하는 데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정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우주신기술에 대한 우대 혜택이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에 그치고 있는바 그 밖의 우대 혜택 등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9쪽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우주산업의 지역 거점을 육성하여 지역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30쪽입니다.

다만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절차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구체적인 사업 수행 내용, 재정 지원 외의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강을 법률에 규정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정부 제출안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조문별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정의 규정 신설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요, 준궤도발사체 정의를 추가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민간 우주개발 촉진은 정부안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이 부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이미 개정되어 있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법체계를 고려할 때 정부 개정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부안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원욱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을 병합했는데요. 일단 이원욱 의원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혁신법에 이미 개정되어 있는 바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한 것이고요.

나머지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기업에 개방한다든지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든지 우주신기술 지정 및 우선사용 등등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아마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들을 담은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신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주 관련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주산업 진흥에 대한 계획들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우선 처리를 하고 나중에 신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조직법 개편 등을 논의하신다고 하니까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은 후속으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우선

은 상정해서 논의를 한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홍익표 위원 4페이지에 ‘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 놔는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어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여기에 이걸 넣지 않으면 미사일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것을 무 자르듯이 이것은 군사용이고 이것은 비군사용이고 이걸 하는 게 또 다른 의미에서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 법 체계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우주 관련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규제, 제한을 만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이것은 국방부에서 요청한 사항이어서 가지고 법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익표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랬더니 뭐.

○소위원장 조승래 이게 정부 제출 원안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수정의견에 돼 있는 것이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의견을 만든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찬 위원 국방부는 그러면 별도의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쪽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던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예, 그 부분은 고체 발사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윤영찬 위원 그게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주발사체라는 것이 같은 기반기술을 사용해서, 미사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술을 활용하는데 민간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우주발사체든 미사일이든 사실은

똑같은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것을 어디는 국방부 용이고 어디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기부에서도 이 법안 내용에 미사일 부분을 아마 포함을 시켰을 것 같은데 그것이 단지 부처의 어떤 업무분장 문제 때문에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이 업체들을 나눌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좀 되게 불합리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우주 이 부분이 평화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군사적인 어떠한 부분이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차관님, 제가 왜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냐면…… 당연히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평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거지 우주발사체가 무기로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적 장거리 발사 체계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지요, ICBM 개발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평화적 목적이냐 아니냐는 그 기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별도의 규범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주개발 관련된 법체계에 이걸 넣으면…… 그러니까 국방부의 반대는 저는 충분히 부처로서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적용됐을 때에는 또 다른,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군사업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거리가, 우리 스스로의 법체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보 상황,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런 요청을 해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신 것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주발사체의 정의에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우주발사체, 그러니까 우주발사체라 하면 위성을 넣어서 우주에 보내는 걸 말하고요. 그건 위성이

들어가는 이상 고체를 쓰는 국방부에서 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주발사체에 대해서 발사 인허가를 과기부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주발사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 미사일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기술적으로는 100% 똑같지만 미사일에 대한 부분은 우주발사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국방 목적상으로 쓰는 별도의 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발사 승인을 갖는 부분이 생각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우주발사체, 위성을 우주에 올릴 때 그 올리는 승인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필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용도든지 간에 모든 인공우주물체 등에 대해서 승인을 과기부장관이 가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아마 이렇게 구체화하자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나 이런 데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지기는 하네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한 대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2건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본 법안은 지난 21년 11월 소위에서 소위자료

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 이후에 수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아래에 진한 소위 심사 요지가 있습니다.

조승래 소위원장님께서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을 동 법률에 추가할 필요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주로 소위자료 내용은 지난번하고 동일하고요. 과기정통부나 관련 단체의 의견이 수정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상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소위 때는 신중 검토였는데 지금 수정 수용으로 변경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의견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제명 변경은 수정 수용, 다양한 현대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일·가정 양립을 모두 일·생활 균형으로 수정할 필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제명을 개정안의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정의견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명 수정안에 따라서 각 관계 조문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과 같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우선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과학에서도 지난 소위에서는 신중 검토였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수정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의 명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과기정통부는 현행 유지였는데 이번에 수정 수용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제명 수정의견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1쪽입니다.

관련 위원회 명칭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의2 관련입니다.

지난 과기정통부 의견은 현행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수정 수용으로 의견을 냈고요. 의견은 제명 수정안에 따라 육성위원회의 명칭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제12조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의 지난 소위 의견은 현행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수정 수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명 수정안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명칭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담당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법률의 명칭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이 수정안으로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목 변경은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용빈 위원 사실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있는데요.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편적 의식으로 대해 왔는데 제목을 일·생활이라고 바꾸고자 하는 게 우리 지식사회의 보편적인 요구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 의원님의 어떤 요구나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제안된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이 부분은……

○이용빈 위원 이것을 요구하는 지식사회 전반의 어떤 요구가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단체라든가 또 의원실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자 해 가지고 가정을 생활로 이렇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용빈 위원 여기서 제안된 내용을 보면 가정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됐다고 하는 점, 특히 혼자 사는 혼족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면 대개는 복수의 가정 구성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걸 좀 담아 내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제시된 거라는 이해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른 위원님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법률안에 통상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일·가정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법들도 다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일·생활 균형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이 법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이걸 앞에 넣고 그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이걸 뒤에 넣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여성과학기술인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을 강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은 앞단에 넣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이 부분을 후단에 넣는 그런 형태로 제목이 변경이 됐는데요.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 하면 다른 법안들을 보면 일·가정 양립이라는 표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법안들에. 그런데 이게 체계상 일·생활 균형이라는 어찌 보면 다른 생소한 용어가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그게 다른 법안에서의 표현들과 이 법안에서의 표현들이 그게 일종의 체계상 조화가 되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개념을 기혼자에 한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범위를 생활로 넓히는 그런 문구를 채택한 겁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니까 그것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소위 여성 과학자뿐만 아니라 무슨 여성 엔지니어도 있을 수 있고 교사들, 공무원들, 어쨌든 다양한 직종의 여성 직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군들도 거기에 보면 일·가정 양립이라는 표현들이 상당수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생활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어찌 보면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경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면 이게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델이 된다면 다른 직업군에 대해서도 일·가정 양립이라는 표현보다는 일·생활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폭넓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더 진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글쎄, 제가 지금 다른 여타의 법률의 이런 형태, 일·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이것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건데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의견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의 법률들이 여성 관련 지원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으로 돼 있을 거예요, 기존 법률 체계가. 그래서 일·생활 균형으로 바꾸는 것은 진전된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존의 법조문 또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법조문의 내용이 일·가정 양립에서 일·생활 균형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이 법으로 시작되는 거냐라는 판단을 지금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이 법은 이 법대로 가는 거지만 이게 꼭 여성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 지원과 관련돼서, 워라밸이라는 게 꼭 여성에만 국한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일·생활 균형이 모든 과학기술인 지원, 그것은 남녀를 떠나서 일·생활 균형 부분이 이후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게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조문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관련 부처간에 어떤 합의점이 있는지 확인하신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조승래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황판식** 이 조문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성 단체들에

도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과충이라든지 이런 여성 단체에서 나온 얘기가 일·가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1인 가정은 배제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포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표현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생활 균형이나 일·삶 균형으로 가는 게 보다 바람직한 표현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그건 알겠고요.

○홍익표 위원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취지는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대부분 일·가정 양립이라는 걸로 우리 법조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기존 법체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과학기술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여성계가, 여성 단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법이 한번 바뀌면, 신법이 이렇게 되면 기존의 구법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한…… 가장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은 좀 확인해 보셨냐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부처에 의견 조회는 하는데 특별히 의견은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소위원장 조승래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일·생활 균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들이 계신 건 아니에요. 계신 건 아니고, 다만 다른 법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새로운 법문이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우선은 그렇게 합시다. 소위에서는 이렇게 수정된 대로,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하되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전까지 여성가족부 등 의견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법문들을 여가부와 상의하셔서 한번 죽 뽑아 주시고, 그러면 그게 일·생활 균형으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여가부랑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거를 전체회의 할 때 한번 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용빈 위원님 먼저……

○이용빈 위원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보면 모범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개정해야 전반적인 법률의 어떤 통합성이,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제안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들을 잘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예, 잘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고용노동부의 의견도 들어보셔야 되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이용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우리가 이 법에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혼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먼저 통과시켜서 전체회의 전에 의견을 듣자고 하셨는데 일단 보류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그러면 정희용 위원님 제안대로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관련된 법안, 여성가족부의 의견 등등을 좀 정리를 하셔서 가지고 다음번 논의할 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이 안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인데 공청회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난번에 한번 토론은 있었지요?

○전문위원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

합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동 법안도 앞서 말씀드린 법안과 같이 지난 소위에서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후에 수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법안소위 심사 요지가 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께서 다수의 국가 대형 R&D 시설, 특히 다수의 가속기 가운데 특별히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관적인 체제에 맞지 않으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령 내에서 제정안의 취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사항 아래쪽에 보시면, 이 법률안은 2022년 4월 현재 변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될 경우에 이에 맞춰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지난 소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5쪽의 오른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법안소위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국내 대형가속기 전반에 적용되는 입법으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수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래서 기존의 ‘방사광가속기’라는 부분을 ‘방사광가속기 등’으로 자구수정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2조의 정의 조항을 수정 보완해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왼쪽의 표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가속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포항 방사광가속기(3세대), 그다음 (4세대),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이거는 지금 대전에 있는 거고요—그다음 중입자가속기는 서울대학병원 주관으로 부산 기장에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존의 방사광가속기나 양성자가속기, 중이온 그다음에 중입자가속기 전체를 포함하는 형태로 방사광가속기 등에 대한 정의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자료의 참고자료 2에 보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대형가

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기정통부에서 방금 그 수정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저희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릴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자료에 보시면 안 제8조(임대료 등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추가되어 있고요, 지난 소위 때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10조(세제지원)에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안 제1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 방식이나 대부 기간, 갱신 기간과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과기정통부의 수정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사광가속기를 방사광가속기 등이라는 표현으로 하고요, 정의 방사광가속기 등 이렇게 수정된 부분을 수용을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승래 예, 홍석준 위원님.

○홍석준 위원 작년 11월 달 소위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가속기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좀 구축이 늦어진단든지 혹은 또 이용의 효율성 내지는 가속기 산업의 활성화 이런 면에서는 단지 방사광가속기 하나로 제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른 중이온이라든지 중입자라든지 관련된…… 앞으로 더 다양한 가속기의 유형이 나오면 어차피 이 법안의 취지로는, 결국은 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유재산의 감면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유사한 가속기로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언급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과기부에서는 좀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준 위원**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이 만약에 이렇게 통과될 때를 대비해서 더욱더 우리 과기부에서 이 법안의 취지를 살려서 관련된 가속기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가속기 관련된 기술을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후속적인 정책을 더욱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방사광가속기 등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 가속기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제명 자체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거든요. 이게 지금 수정의견을 받아들이어서 방사광가속기 등의 구축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제명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제명을 바꿨습니다. 수정의견 제일 상단에 보게 되면 제명, 방사광가속기 등의 구축 및…… 이렇게 제명을 바꿨습니다.

○**윤영찬 위원** 아, 바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예.

○**윤영찬 위원** 일단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이온가속기 같은 경우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자꾸 문제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속기가 전국에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기 구축의 경험들이 매우 단절적이고 분리돼서 서로 노하우를 쌓아 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횡적으로 연계시키거나 서로 교류하면서 경험을 세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질문도 했었는데…… 이왕 방사광가속기 등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이걸 넓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이런 어떤 상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가속기협의회 1단계로 그걸 좀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청주에 방사광가속기 그 부분도 포함 방사광가속기연구소 그 인력이 상당 부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가속기의 어떤 전체적인 협업체계 이 부분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찬 위원** 그거를 아예 법률적 근거를 남겨놓는 건 어떨습니까, 추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법률적 근거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가속기에 서로 협업하는 그런 형태니까요.

○**윤영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해서 가속기 구축 사업에 나서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 인적 교류라든지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놓으면 기관 단위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페이지에 보면 변재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직 의결이 안 된 상태고 수정의결될 경우 이 법안도 맞춰서 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 행안부나 기재부가 실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재일 의원님이 함께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무래도 수정의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이 법안도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어차피 이게 지금 국유재산법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정필모 위원** 오늘 이것을 의결하는 거는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그런데 저희가 제정안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저희 쪽이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게 되면 이 수정안도 같이 오는 그런 법체계입니다.

○**정필모 위원** 지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거는 아직 상임위 통과가 안 된 상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소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필모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수정되면 그거에 맞

취서 이것도 수정해야 된다는 게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의결하는 거는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순서는 저희들 게 먼저 가는 게 맞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정법안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필모 위원 그러면 만약 다시 또 거기에 맞춰서 수정할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나 법사위 가서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두 법률 간 조화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이게 먼저 의결이 되면 나중에 이거를 어디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수정의결되는 경우에 어디에서 이거를 다시 조정해서 맞춰요, 여기서 의결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시간을 가지고 그쪽하고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조승래 지금 같이 발의된 국유재산특례법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부정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부정적이지요?

○정필모 위원 행안부도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의결해 버리면 나중에 두 법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만약에 국유재산특례법이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이 제정법안에 담았던 국유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 조치들을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정도까지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의 그걸 보고 상임위에 올리는, 전체 의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가는 것은 맞습니다, 순서적으로.

○소위원장 조승래 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지원 법률로 준비가 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예.

○소위원장 조승래 그런데 거기에 ‘등’이 들어가면서 체계가 조금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차라리 그냥 가속기 구축으로 해서 가속기……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이렇게 들어가면 체계상 맞지만 ‘방사광가속기 등’ 하면 ‘등’에 대한 개념 규정을 법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체계가 맞는 것이냐……

○이용빈 위원 저도 사실 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조문에 애매모호성을 은연중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등’이라고 해서 그냥 통칠 수 있는 것인지, 예컨대 영문으로 이걸 번역하게 되면 ‘방사광가속기 등’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전부 방사광가속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윤영찬 위원 여기 수정의견 3호에 ‘방사광가속기 등이란 방사광가속기와 그 밖의 대형 가속기인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놔거든요.

○이용빈 위원 그렇게 규정은 돼 있으나 그게 타당한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등’ 자 하나에다가 그냥 무조건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냐……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률안의 정확한…… 원래는 어쨌든 중복에 구축하고 있는 방사광가속기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만 하나,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자, 그래서 ‘등’이 붙은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법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기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법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축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지원 그래서 거버넌스도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가야 법이라는 것이 정합성이나 체계성이 잡히는 것이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약간 억지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저도 이것 보면서, ‘방사광가속기 등’이라 그래 놓고 밑에 2조 3호에 보면 해 놔습니다. 그러니까 4개입니다, 방사광가속기, 대형가속기인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

속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법 같으면 이게 똑같은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데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하니 ‘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군데를 풀어서 넣으면, 예를 들어서 방사광가속기하고 중이온가속기하고 다른 거거든요. 다른데 이 법안 하나로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냐는 겁니다. 원래 취지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관련된 특별법안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 다른 것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특별법이라는 것이 A를 타깃으로 했는데 B와 C, D를 다 쓸 수 있는냐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 법이지요.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현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방사광가속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세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법에서 20년으로 한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가속기라는 건 한번 지어지면 최소한 50년, 100년씩 가는 것들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제한이 있어서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세제 지원, 임대료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정책적 지원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광가속기 등’으로 써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앞에 정의할 때 방사광가속기 하나만이 아닌데 방사광이란 어떨다, 방사광가속기란 어떻다라고 방사광 쪽의 내용이 정의 부분에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대형 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내용,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료 20년 제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다른 가속기 쪽에도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걸리

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저는 정리를 좀 더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법명에다가 ‘등’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정의 조항에 ‘등’을 신설하는 것 정도 가지고 이 법안의 정합성이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방사광가속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과 정의 규정만 들어가는 것이어서, 이렇게 돼서는 그게 홍석준 위원이 문제 제기하신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제정안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기재부나 행안부가 어쨌든 국유재산 특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견을 들어서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저는 이게 완결성이 좀 떨어져 보여요, 법안의 완결성이.

그러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소위자료 1쪽, 주요 내용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와 절차 규정 관련입니다.

새로운 국제조약 체결, 기후 위기의 급증 등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올해 5월 달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올해 말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경 절차와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계획 변경 시에도 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립할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보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또한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으로써 유연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니니까요 굳이 토론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자료 1쪽, 주요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법상 지방공휴일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 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월력요항이란 매월의 공휴일, 연간 휴일 수 및 양력과 음력의 대조 등을

요약한 것으로 날짜와 24절기를 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천문연구원으로부터 매년 6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이 월력요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휴일의 정의상 현행 천문법 제2조제6호의 기념일에는 이미 지방공휴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천문법과 하위 시행령에 따라 제작되는 월력요항 주의사항에서도 이미 지방공휴일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럼에도 법률상 지방공휴일이 월력요항의 작성 대상임을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지방공휴일의 지정 의미와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5쪽입니다.

지방공휴일의 구분 표기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개정안에 근거하여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을 별도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명시할 경우 국민들이 달력을 통해 지방공휴일의 존재를 인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공휴일은 휴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6쪽 위쪽입니다.

토요일을 비롯한 일반적인 휴무일을 색깔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분 표시할지 여부는 민간 달력업체가 각기 자율적으로 결정해 온 사항입니다. 지방공휴일을 별도 구분 표기하도록 할 경우 민간 영역에 대한 간섭, 기타 휴무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부 의견은 동의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한 것은 별도 구분 표기 방식을 색깔 구분보다는 해당 지방공휴일을 직접 명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예를들면 4·3희생자 추념일 경우에는 (제주·공휴일)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경우에는 (광주·공휴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용홍택 3페이지 월력요항 표기 대상 및 지방공휴일 명시 이 부분

은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지방공휴일의 구분 표기 근거 마련 이 부분은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저도 그렇지만 통상 지방공휴일보다 기념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공휴일이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그 지역에 출장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타 지역 사람들이 알면 아무래도 스케줄을 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괄호로 표시하는 방식이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홍택 과기부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혁신본부장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는 동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제명의 개정법률안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각각 심사한 다음에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1쪽,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일·가정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관장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게 되

면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되어 창의적인 연구 환경 및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수정 수용입니다.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에 관련해서는 선언적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5쪽에 그 수정 의견을 저희가 포함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성평등 가치 구현 노력 관련입니다.

현재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이 여전히 출연연 기관장이나 고위직급 직원의 구성에서 약 90% 정도가 특정 성별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정 성별 편중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 출연연 전체인력의 성별 구조라든지 이공계 여성인력 배출 등 종합해서 10분의 7이라는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이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기본법이므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직할기관, 특정연구기관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첫 번째, 첫 항은 수정 수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3조의2는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과학기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전반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으로 변경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 수용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조의2 2항 성평등 가치 구현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데 10분의 7이라는 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기관장의 성별을 법제화한 입법례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이게 운영 자체가 어려운 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연연 이사회·기관장 선임은 이사회 권한이고 그것은 과기출연기관법에서 논의돼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은 신중검토지만

반대를 하시는 거네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두 번째 항은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논의를 좀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더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지금 이게 보통 성별 비율이 정해집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니까 10분의 7이라는 기준에 대한 적정 여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성별 비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맞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의 성별을 법제화한 입법례가 사실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기관장이 스물다섯 분 이렇게 있지요, 출연연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출연연 이사회 권한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날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잘못하면 운영이 되지 않는 게 누가 한 명 자기가 사임을 하든지 하면 법 위반이 딱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제가 과학자로서 딱 보니까 이게 좀, 제가 정부인사로 이런 단어를 쓰면 이상하지만 숫자를 이렇게 박는 것은 위원회나 인사위원회하고 달라서 이것은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이렇게 쓰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대체로 ‘신중검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신중검토’라고 제출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이것은 잘못됐다. 저는 여성을 리프리젠티(represent)하는 건 좋은데 숫자를 이렇게 박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

○소위원장 조승래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소위자료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료 3쪽을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와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을 이미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요.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담 인력과 경비 및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 자문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취지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으로 자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자문기구를 새로이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할 실익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의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치 현황·근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수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 자문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역소멸과 관련해서 지역혁신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입법사항이라 보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외의 자문기구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만 여기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조명희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는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

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홍석준 위원** 저도 지방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 봤는데 사실 보면 지방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좀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예, 제가 이번에 전국을 돌아봤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석준 위원** 그래서 이 법처럼 일단 예산은 차치하고 법적인 국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데 향후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지방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활성화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동시에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제가 볼 때 그것은 새 정부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새로 구성하든지 하시는 것은, 활성화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고요. 지금 이 자체는 법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향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정부는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지역과학기술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100% 수용을 합니다. 그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하면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도록 입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되느냐는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그것은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하실 수 있는 항 중에는 지방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이나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돼서 이제까지 해 오던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을 이렇게 갈라 주는 데서 떠나서 지방에서 자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우리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서 지방에 대한 뉴딜을 지역혁신하고,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일단 이 항에 대해서 조명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충분히 중요하고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실제로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예를 들면 각 지역에 위원회 같은 것들을 설치하면 지역 스스로 지역의 R&D라든지 과학기술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도록 일종의 통으로 내려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자체로 기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정책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혁신본부에서 제가 1년 동안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 준비를 해 왔고요. 지금 통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자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투자하는 방법들을 일단 체계를 만들어 놔습니다. 나중에 시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들어가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지금 이석을 몇 시 정도에 하셔야 되나요? 몇 시에 하셔야 돼요?

○**윤영찬 위원** 4시요.

○**소위원장 조승래** 4시.

다른 분들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의결하려면 다섯 분은 계셔야 되니까.

윤영찬 위원님 빼고는 그래도 한 4시 반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주요 내용입니다.

보안교육 실시를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중요 정보의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보안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1조의2제1항은 보안책임자 지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규모에 따라 2인 이상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해당 규정이 연구개발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위 시행령 입안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2조(과태료)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의무이행수단을 확보하는 취지에 부합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는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안책임자 지정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만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체계상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수정 수용입니다. 체계 간 소화 측면에서 법조문을 신설하는 대신 현행 조문을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쪽 수정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내용은 수정 수용이고 그리고 이 보안책임자 지정에 관해서는 그리고 보안교육에 관해서는 중요성을 공감하고 그리고 수정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면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침익적 처분인 과태료 신설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규정상 여러 가지 참여 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저희들이 수정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 수용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연구개발기관에 보안 사고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 보안책임자가 지금까지 지정이…… 당연히 요즘 추세는 연구개발이든 그 다음에 민간기업이든 어디든 보안책임자들을 대부분 다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개발 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늦춰져 온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보안책임자 지정하는 것이 늦추어진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이 안에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 지금 어쨌든 보안책임자 지정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사실은 보안책임자에 상응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 보안이라든지 이쪽에 맞는 스펙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그렇습니다.

○윤영찬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아직까지 안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아니요. 회사나 이런 데 같이 딱 맞는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거나 그리고 티오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갭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안책임자를 거기에 맞게, 스펙에 맞게 지정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보안교육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참여 제한,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고, 그게 또 부족하게 된다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스

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뽑고 하는 문제들하고 연결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보안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률에 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보안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스펙,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윤영찬 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걸 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티오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따라가 줘야 실질적인 실효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동의합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열심히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동일 제명의 법안이 있으니까요.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극업무 추진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시행령인 적극행정 운용규정에서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을 경우와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위 적극행정 운용규정과 유사하게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기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법 제7조 및 제6조제7호 등의 취지와 연계해서 적극적 연구활동을 보다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취지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위 적극행정 운용규정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예시를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예시 및 정의 등이 부재하여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불수용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혁신법은 국가 R&D 사업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원대상인 범위가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입법 취지에 분명히 동의는 하지만 이것이 선언적인 일이 되고 그리고 연구자 간의 소송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쟁 및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향으로 봐서 불수용하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 본부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법적 분쟁 지원이라는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연구개발의 성공이다 실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흐름을 잡고 있고 그리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로 인해서 무슨 민형사상 소송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지금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제 사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사례가 있는 것인지, 있어서 이런 필요성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공공의 이익

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그렇지요. 그리고 적극을……

○정필모 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정 사례가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맞습니다.

○정필모 위원 그러니까 모호성이 좀 있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교육부가 의견 제출한 것 뒤에 써 있습니다마는 적극업무라는 것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 이런 단어들의 선정에 있어서 나중에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수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지금 실패에 대한 용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것이 증명이 되면 실패를 성실실패라고 해 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예.

○김영식 위원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 오대현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그런데 금방 성실실패도 나중에 잘 보시면, 국가 전략 거기에 보면 DARPA 이야기를 우리가 한참 했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왜 그러냐면 법이 워낙 많이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도 좀 선언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현재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항을 사용하는 현재 상태로 사용하고 정말 원칙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겁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감사원 등에서 적극행정 면책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적극행정 면책 조항에 연구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사실은 국가전략기술개발 거기에서 저희들이 용감하게 감사원법 자체를, 그렇게 되는 경우는 면제하는 것을 감사원에 제안했다가 저희들이 좋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하여튼 뭔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했고, 의사일정 제9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35조 조문의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간 영역의 주도적·자발적 참여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타당한 취지로 보았습니다.

현행법 제35조에서도 이미 영리·비영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를 포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신설하기보다 지식재산의 진흥

과 학술활동에 특히 주목하여 이를 수행·지원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려는 점 그리고 단순 단체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등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법 조항을 수정하여 조문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개정안 제35조의2제3항과 같이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할 경우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육성 대상 법인 및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부칙 수정의견 시행령 제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금방 수정의견을 낸 것과 같이 수정 수용으로 하고 개정안에 관해서는 35조 2항에서 '진흥·학술활동'이라고 있는 내용에 '창출·보호·활용'을 붙임으로써 가능하고 3항에도 '운영이나 사업추진에'라고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수정안을 냈고요.

4항에 저희들이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함으로써 뒤의 내용들이 필요 없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출했구요.

부칙에 관해서도 '공포한 날부터'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과 그리고 통과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의견과 같이 부칙에 6개월이 경과한 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포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조문 신설 대신 현행법 조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을 해 주자라는 쪽인데 지금 현행 체계에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데, 있는 법을 잘 몰라서 이걸 만든 건지 안 그러면 현행 체계에서도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법이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현행법에는 '창출·보호, 활용'은 있는데 '진흥·학술활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진흥·학술활동'을 35조 2항에 추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뿐만이 아니고 사업 추진에 관한 필요경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 추진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추가하여야 이 취지에 맞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추가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법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 이후에 혹시 추가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성구 자료 3쪽입니다.

제정안 조문 체계입니다.

본칙이 8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성 기본계획 및 추진 체계 그다음에 연구개발 추진, 인력양성 그다음에 기반조성, 협력 및 보호, 특별회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2쪽을 보시겠습니다.

한정된 국가 차원을 고려할 때 향후 국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주요 원천 전략기술별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지원 체계하에 일정 수준 집중된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통상, 신산업,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육성 체계 정립이 필요해 보이는바 기술 신흥 단계부터 성숙산업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해야 할 전략기술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대상 기술의 특성 및 범위, 지원 정책 방향·방식 등의 측면에서 관련 현행 법률과의 차별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는바 제정 실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조문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술인 요지는 생략하고요 위원님 질의 요지를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의 정의 규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명확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의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첨단기술과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타 부처의 반대가 있는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원자력 관련 부분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나 KISTEP의 역할 의견 제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하에서도 전략기술 관리는 필요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고 부처 간 이견을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진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페이지의 관계부처 의견 중에 대표적인 두 부처 의견만 작성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수정 수용입니다.

그래서 제정안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확보하기 위한 견고한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수용입니다.

동 제정안이 제정 목적, 기술 정의, 지정요건, 기술육성 주체 등의 측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바 수용하기 어려우며 제명 변경 및 명확한 차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6쪽입니다.

공정회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정이 돼서 수정의견을 본 소위자료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정의와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일한 국가전략기술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간 용어 중복에 따른 혼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에 별도로 우리 국회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쪽입니다.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위원회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라고 목적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다소 명확하지 않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대강의 내용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기자문회의 소속일 경우에는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기술 선정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제정안 시행 시 국가전략기술 추가 선정 절차의 예시로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검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라 특정 기술에 대한 긴

급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위 법령 마련 시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쪽입니다.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지정과 관련해서 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총액 예산 계상 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예산 총액계상을 허용하고자 하나 예산 총액계상 허용 조항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하여 특정 분야의 사업 등에 이를 허용한 개별 입법례가 없고 예산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를 법률로써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 국가재정법의 취지와도 반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4쪽입니다.

총액 예산 계상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전기획을 거쳐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조정·배분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편성하므로 미리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입니다.

26쪽을 보시겠습니다.

예타 특례와 관련해서 예타 특례 사항은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단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만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의 의견을 수정 수용한 부분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현재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불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37쪽입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합동으로 보안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수용한 부분입니다.

50쪽입니다.

공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의견입니다.

제30조 3항에서 공유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허브 구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역혁신허브를 구성하여 신청하고 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과 지역산업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과기정통부 의견입니다.

55쪽입니다.

제32조제3항과 관련해서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및 인원 배정 등에 전략연구사업 참여기관을 우대하는 규정의 경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을 축소 운영하려는 정책 방향에 배치되며 타 분야 병역지정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는 병무청 등 의견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제33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관련해서도 단순 조세특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세법의 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구체적인 조세 감면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1쪽입니다.

국가전략기술원의 설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기획국(DARPA)와 같이 R&D 전문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DARPA는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춘 공무원 조직이 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전략기술원의 운용 범위를 국방·안보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도전적 연구개발 관련 기관·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기관을 지정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총괄사업책임자 관련 부분은 총괄사업책임자는 국가재정법, 감사원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국가전략기술원이 정부의 출연을 받는 공공성 높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원활한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다른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포괄적으로 형해화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9쪽입니다.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 설치 관련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이 특별회계는 단일회계주의의 예외로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관련되는 장 전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76쪽입니다.

유효기간이 2042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어쨌든 이미 전문위원이 보고하면서 과기부 의견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 지난번에 공청회 때 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금방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산업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방위사업청, 특허청, 국가정보원, 모든 부처들이 의견을 낸 것들에 대해서 저희 부가 전반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산업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한 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저희들이 수정하고 서로가 해서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중에서 산업부하고 기획재정부의 제35조 국가전략기술원 이슈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은 지금 현 정부나 다음 정부, 어느 정부,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는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는 기술 블록화하고 그리고 이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이제 경제·산업을 넘어서 전략기술의 확보가 국가 안보나 외교 그리고 국가의 생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걸쳐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저희들과 경쟁을 하거나 선도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산업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원래 시작이 뭐였냐 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입니다. 여기서도 다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변재일 의원님도 발의를 해서 이게 갖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시작했냐 하면 반도체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법이라는 것들이

시작을 해서……

그때 할 때 정부 내에서 이것은 반도체, 이차 전지, 바이오헬스 등 빅 3에 지정되어 가지고 공급망 이슈에 한정된 법으로 가는데 이게 WTO 국제통상의 이슈로 인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그렇지만 그거에 한해서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부총리 회의에서도 그렇고. 그거에 따라서 12월 달에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 합의가 되었던 법입니다. 또 이 법이 합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산업법으로 전체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제안한 산업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머추어(mature) 기술은 되는데 신흥 기술에 가서 적용을 하면 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조치 의무, 침해 행위 등등 강한 규제가 들어 있습니다, 산업법은 반도체 이런 이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머징 크리티컬 테크놀로지(emerging critical technology)에 이걸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렇게 모를 수 없다, 산업법에 있어서 산업부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전략기술원 이슈를 저희들이 남겨 놓은 이유는 이것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 하면 K-DARPA 이슈입니다. 창의 도전적인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DARPA를 안 베낀 나라가 없고 한국도 모든 부처가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되는 이유 당연합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잘해요, 그렇지요? 레시피가 있는데 어디에서는 소금을 빼라 하면 소금을 빼고 어디에는 고춧가루를 빼라 그러면 고춧가루 빼고, 그러면 맛이 없지요.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려면 이번에는 반듯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전략기술원이라는 체제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사실 여러 부처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하는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저희는 설치 지정 근거 규정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 이거는 아직 협의 중인데, 완전하지 못하는데…… 거의 대부분 산업부가 불수

용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로가 다 아는 내용으로 불수용 자체가 틀린 거라서 그것은 여기에서 그냥 무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5조, 36조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 수정 수용으로 오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감사합니다.

이것 제가 제출한 법안인데 그때 공청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첨단전략산업법과 전략기술 육성법 이 두 체계로 가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제가 그렇게 과기부와 산업부에 주문을 했고 그런 취지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산업부의 법 제정 필요성 자체가 없다라는 반대 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고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조정이 됐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국가전략기술원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당장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기관에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정도로만 남겨 두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의 얘기가 지금 된 겁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맞습니다. 그것 빼고는……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논의는 길게 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밖에 원안위 관계자들이 와 있어서 원안위 법도 몇 개는 좀 논의를 해 줘야 되니까 이것은 최대한 그냥 축약해서 논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 상태로 처리하자고 하면 처리가 될 것이고 아니면 더 논의하자고 하면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위원님.

○홍석준 위원 본부장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창조적인 이런 어떤 R&D 과제 더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투자가 돼야 되는 게 분명한데 사실이 경계라는 게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경계를 할지, 너무 자의적이고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

고, 사실은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경계를 지어 가지고 별도 트랙으로 또 R&D 로드맵을 그리고 체계를 달리 해야 되는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지금 신성장동력의 어떤 버전 3 이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략기술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냥 AI가 아니고 그것 중에서 우리나라의 전략, 환경에 맞춘 어느 부분을 딱 뽑고 그거를 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일들하고 절대적으로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 미국도 엔드리스 프론티어 액트(Endless Frontier Act)하고 칩스 액트(Chips Act)들을 한 것과 같이 필요성은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했고요. 그리고 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전략성이 맞는 것들을 딱 짚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다른 트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김영식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김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국가전략산업과 국가 전략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전략기술 육성에 관련된 법안이라, 위원회인데…… 아마 차기 정부도 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행·재정 지원을 다 통합해서 만들겠다, 그런 법도 한 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전략기술위원회의 설치인데 이것 말고 또 다른 형태에서 논의의 전략이라 그래야 되나, 전략기술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체계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게 궁금해 가지고. 위원회가 많은데, 지금 이와 같은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국가전략기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서 그것은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머징 테크놀로지하고 관련된 것은 이름이 비슷하다 하는 것 빼고는 완벽하게 다른 일이다. 그리고 그 산업법을

읽어 보시면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에 관련된 내용으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본은 경제 안보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법을 통과시켰듯이 경제 안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법은 미국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까지 산업을 국가가 하지 않았는데 칩스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반도체,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 칩을 들고 흔든 그 내용이지요. 보호, 공급망.

그런데 그거와 함께 같이했던 게 뭐냐 하면, 핵심 신기술 집중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같이 뭐를 만들었냐 하면 엔드리스 프론티어 액트를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갖고 있고 거기 전략위원회라 하는 내용들을…… 두 개가 이름이 비슷해서 참 그렇습니까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산업하고 기술하고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라 하는 이 내용이 전략기술에 관해서 전략이 무엇인가, 10대 기술 중에서도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이용빈 위원님.

○이용빈 위원 오늘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이슈가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충분히 검토된 것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이 제정법이 제안된 이유나 비전과 같은 것도 충분히 공유가 됐고 또 과방위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 중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 국가전략기술위원회의 설치 또 예산 총액계상 허용, 예타 조사 관련 특례조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법안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 안보라고 하는 측면 또 세계 기술패권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국가기술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덤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결국은 기술인재를 어떻게 육성해 가느냐 하는 트랙이 될 텐데요. 이공계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연동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특별히 처음 시작은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하는, 모든 일을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IST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확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일들을 잘 보시면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좀 평균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산업부하고 교육부를 살짝, 지금 같은 부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서 참 죄송하지만 어떻게 집중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UST, 출연연구기관이 이 전략 기술들을 맡아서 거기에 있는 UST가 있습니다. 대학원대학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같이 함께함으로써 지금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추후에 이런 일들이 개선되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산업법 해 보면서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소위원장 조승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하니까, 이게 법 조항이 워낙 두껍고 큰 거라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조금, 한 번 정도만 타이밍을 주시면…… 다음에 통과를 하시더라도 일단은 이번에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말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산업부의견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일단 기재부의 국가전략기술원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인력 양성과 관련된 것들 이 정도가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금방 산업부 이슈는 제가 장관회의에 갔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부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께서도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산업부가 지금 잘못 이해하는 것에 동의했고요. 그다음에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 산업부장관도 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총리에게 직접 보고했고 총리님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기관으로서 합의된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부끄럽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드렸으니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본부와 관련된 것은 이 정도로 하죠.

지금 원안위 관계자들이 거의 2시간 이상 기다려서 한 20분 정도만 더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동안 의사일정 제13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1월에 이루어진 정부 부처 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제기관 일원화 합의사항을 입법화하는 내용입니다. 합의사항 내용은 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가 원안위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원안위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에 대한 기록·보관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며.

3쪽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 및 검사를 의무화하며,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4쪽입니다.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위반 시 과태료 부

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승무원의 우주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김철민 의원안과 같이 승무원의 건강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에 건강진단을 포함시키는 형식보다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변재일 의원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철민 의원안 제23조의2는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관리업무 종사자의 경우에 피폭선량은 우리나라 연간 자연피폭선량 3.04mSv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임을 고려하여 건강영향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승무원의 경우 승무원의 피폭은 최대 5.46mSv로 일반인 선량한도보다 피폭선량이 비교적 높아서 건강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만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의 가지조문 제18조의3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측 중단입니다.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와 관련해서 안 제18조의2(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제2항은 2021년 8월 10일 기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해서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19쪽과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입니다.

양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원안위는 승무원 약 2만 명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및 건강진단 결과의 방호정보를 방사선작업종사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예산 확보라든지 계획 수립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타당한 의견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 장보현입니다.

이 법은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우리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승무원 건강진단, 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위 의견은 당연히 수용입니다.

다만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비교적 높아서 건강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연간 자연피폭에 비해서 낮고 해외 사례도 없는 만큼 원안위 의견은 수정 수용입니다.

그리고 방호정보 구축, 교육 체계,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6개월은 좀 짧아서 1년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의 의사일정 13항과 변재일 의원의 14항을 병합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개정 내용 중 일부 수용, 수정 수용 그렇게 의견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다음 법안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의결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7건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준비된 심사자료별로 심사한 후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내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현황은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다음,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 관점에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위치와 설계 적정성 여부를 공사시작 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동 장치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 방사선 안전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봅니다.

13쪽 부칙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조(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항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공사를 착공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전검토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장보현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고출력 방사선이 방출되는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시설 위치와 적정성 여부를 착공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착공 전에 사전검토를 함으로써 사업을 효율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수준의 방사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마저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6항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결격사유 중 형벌 기준에 대한 사항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법 제114조 1항 및 제115조의 벌칙 규정의 경우 종전에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지만 2014년 5월 법정형 정비에 따른 일괄 개정에 따라 금고형을 삭제하고 징역

형으로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동 벌칙 규정과 달리 결격사유 규정에는 금고형이 그대로 남아 벌칙 규정의 법정형 정비와 동일 취지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장보현 결격사유 중에서 형벌 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일치시켜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저희는 이 취지에 동감하면서 당연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병합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17항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및 산업위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18항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비방사선시설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비방사선시설 해체 절차를 신설하며 비방사선시설 해체계획서 작성 시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방사선시설 정의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원안위는 비방사선시설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비방사선시설의 해체제도 도입에 관하여 원안위는 동법 제28조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규정과 유사하여 이중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비방사선시설의 해체완료 보고 시 해체완료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완료보고서는 원전의 전체 해체가 완료된 이후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방사선시설 해체계획서 작성 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규정에 대하여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 규정과 유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13쪽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비방사선시설의 해체는 방사선 유출의 위험이 없으므로 주민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비방사선시설 해체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신설 규정과 관련하여, 하단입니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최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할지 행정질서벌을 부과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장보현 본 개정안은 비방사선시설 정의 규정과 해체 절차를 신설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시에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것인데 해당 원자로 시설이나 설비의 방사성 오염조사 전에는 비방사선시설을 사전에 특정하기가 어렵고 비방사선시설의 해체 시에 현재 운영 중인 설비나 인접 원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 내에서도 해체 준비 목적에 필요한 제염, 방사성 오염조사, 위험물 제거 등 일부 비방사선시설의 해체 활동도 해체 승인 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지금 원자력안전법이 21항까지 있으니까 이것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1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의사일정 19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법안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건설허가 등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시하고 건설허가 등 각종 신고 시 원안위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상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 없는 강학상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는데 실정법상으로는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실무에서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리하는 것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의 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인 접수행위이며 행정행위인 수리는 아닙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법상 신고 조항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번호에 음영 처리한 31개는 개정안에 따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4번 제15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와 33번 제97조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도난 등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장보현 해당 개정안은 법리적 완결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고조문 중에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신고 수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 20항과 21항은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니까요, 묶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의사일정 20항과 21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용원자로뿐만 아니라 열출력 2MW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도 열출력에 따라 반경 약 0.5~5km 범위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의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2쪽입니다.

다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즉 2MW 이하의 연구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주민 건강영향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박완수 의원안 제105조의2제4항에서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사대상과 조사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내용 및 방법 등은 조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적어 삭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7쪽 하단입니다.

국내 연구용원자로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연구용원자로는 대전 유성 소재 하나로연구로 1기가 있는데 열출력은 30MW입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규정입니다.

우측 중단의 검토의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전용원자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시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과 시행령 준비 등을 감안할 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1쪽입니다.

참고자료 1번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장보현 이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 외에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에 대해서도 방사선 위험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사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이상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먼저 아까 논의한 것 의결을 하고 논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김철민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5항부터 21항까지 6건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견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은 수용하는 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6항도 지금 별 탈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17항은 중복규정이라 넣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수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18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원안위나 전부 다 불수용이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 19항도 보니까 지금 다 괜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항도 수용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소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제출된 개정안 중에서 17항은 일단은 논의에서 제외했으니까 빼는 것으로 하고, 18항 비방사선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양정숙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불수용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수용 의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 측 수용 의견에 대해서 불수용 의사가 있으신 위원님들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건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의

사일정 제15항·제16항·제19항·제20항·제21항 정부가 제출하고 권성동 의원, 정희용 의원, 박완수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5건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영식	윤영찬	이용빈	정필모
정희용	조승래	홍석준	홍익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전문위원	한성구
입법심의관	박동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용	홍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	경수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권	현준
미래인재정책국장	황	판식
성공평가정책국장	오	대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장	보현
안전정책국장	조	정아
방사선방재국장	신	재식